

2025년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공공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굴과 과학기술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5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정희권

□ 목 적

-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혁신성과 확산
-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들의 도전과 협력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추천방법 및 포상부문

- (추천방법) 공모를 통한 추천(자기추천, 타인/기관추천)
- (포상부문) 기술사업화 유공 총 9점(단체)
 - 포상규모 : 과기부 장관상 3점, 특구재단 이사장상 6점

기술사업화 유공			
구 분		① 기술이전사업화	② 사업화 지원
시 상	내 용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성과 창출	
	대 상	세부 부문	TLO, VC, AC, 대학(산학협력단 등 포함),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 협회 등
훈격/수량		①-1 특구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대상(장관상) 1점 우수상(이사장상) 2점	①-2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대상(장관상) 1점 우수상(이사장상) 2점
부 상		장관상 300만원 상당, 이사장상 200만원 상당	대상(장관상) 1점 우수상(이사장상) 2점

* 부문별(세부 부문 포함) 시상 건수는 접수내역·선정결과 등에 따라 총수(9점)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추천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추천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단체표창의 경우, 기 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인 자,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추천 제외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아래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 내용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1. 6.(목) ~ 2025. 11. 26.(수), 15:00까지
- (신청방법) 공모전용 이메일(innoaward@innopol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마감기한까지 온라인(메일) 접수
 - 신청 시 자기추천, 타인 또는 기관 추천이 가능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가이드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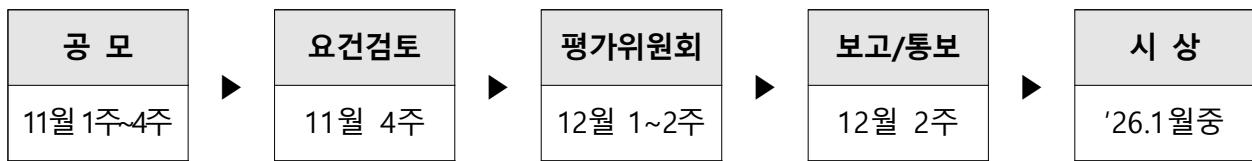
자격기준 및 평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기술이전 사업화	①-1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전받아, ◦ 공공기술을 사업화(공동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하고, 사업화를 통한 성과(기술이전 실적, 매출 신장, 제품 수출, 투자유치 등)를 창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기업
	①-2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기술이전 실적, 매출신장, 제품수출, 투자유치, 혁신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진출 등)를 창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p>*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p>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창출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② 사업화 지원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성과물의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중개하거나, ◦ 공공TLO 업무 수행 또는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특구 발전에 기여한 ◦ 접수마감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TLO, VC, AC, 대학(산학협력단 등 포함),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 협회 등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특구 관련 공공연구성과물의 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업지원(멘토링, 투자, 기술금융, 컨설팅 등)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관 련 내 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①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화 대상 기술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부합도 등 기술의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사업화 수행·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사업화 혁신/우수 사례 · 특구재단 R&D사업 참여이력(해당 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별 주요 실적 · 특구 내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신청자(단체)의 주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관련 업무 수행실적 (기술이전·거래·사업화)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성과* <p>*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자의 역할(기여도)</p>	
	사업화 성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제품의 경쟁력 및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성과(기업 내부 효율성 제고, 산업기여도, 협력 파트너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성과(재무·매출성과, 투자유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 	
합 계			100
②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등 우수사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기업 간 기술이전·중개협력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 능력(TLO조직, 사업화 실적,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거래·사업화 성과 · 공공연구성과물 활용을 위한 노력도(BM, 마케팅 등) · 특구 내 기업발굴,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실적 · 현장 밀착지원, 단계별 맞춤형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 	40
	특구발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공공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환경 조성, 기업성장지원,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30
합 계			100

□ 추진일정 및 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공고 가능

□ 기타사항

- 제출서류 작성 방법은 각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신청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들은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생성하며, 파일명은 하기와 같이 양식 준수

- | |
|--|
| 1) 개별 파일명 : 제출서류명_단체명 |
| 2) 압축 파일명 : 2025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포상부문)_단체명 |

- 심사 과정에서 주최·주관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특구재단 내규 및 결정에 따름
- 타인 또는 기관 추천의 경우, 서류접수 이후 별도의 심사 과정이 추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추천 대상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함
- 허위 공적 기재 시, 추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
 - ☎ 042-865-8833, ✉ innoaward@innopolis.or.kr

[붙임] 2025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수상자 모집 신청서 양식 1식